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노후 주택개량 및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학입학 특례 신설〉
■ 이상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07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노후 주택 개량 및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신설	2
2. ‘대학 정원 외 입학’ 특례 등 신설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상회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11.
3. 회부연월일 : 2024. 7.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울릉도·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등을 통해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적 위협, 면적, 인구 등에 있어 유사성을 가진 서해5도에 대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노후 주택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학입학 특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두고 있지 않아 울릉군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울릉군 등 국토외곽 먼섬의 주민에게도 「서해5도 지원특별법」 수준의 지원규정을 두어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

Ⅲ. 검토의견

1. 노후 주택 개량 및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신설

개정안은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 개수,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안 제10조제2항 신설), 국토외곽 먼섬 지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029호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10조(기반시설 설치 등) ① (생략) <u><신설></u>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수·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u><신설></u>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2조(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① 국가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해 5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률 제20029호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10조(기반시설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가등은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수·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3조(정주생활지원금 지원) ① <u>국가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외곽 먼섬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토외곽 먼섬 중 옹진군에 위치한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민들에게 노후 주택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학입학 특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개정안은 서해 5도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국정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에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과 유사하게 노후 주택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및 대학입학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해 5도의 경우,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노후주택개량사업의 경우 서해 5도에 건축되어 20년 이상 된 주택의 개·보수에 적용되며 보조금 지원한도는 동당 최고 4,000만원, 자기부담금은 총 공사비의 20%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¹⁾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368동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음(총 국비 투자액 282억원).

정주생활지원금의 경우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서해 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거주 기간(마을 이장의 실제 거주 확인)이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결혼이민자로서 체류지가 6개월 이상 등록되어있고 실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게 지급되며, 2024년 정주생활지원금은 6개월 이상 10년 미만인 자는 매월 10만원(연 96만원), 10년 이상인 자에게는 매월 16만원(연 18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약 4,981명의 대상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²⁾

1)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이 지침은 서해 5도에 건축되어 20년 이상 된 주택의 개·보수에 적용한다. 부속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주택의 노후가 심하여 개축이 불가피한 경우, "웅진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기준) 보조금 지원한도는 동당 최고 4,000만원으로 1회 한하여 지원하고, 자기부담금은 총공사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2)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를 말한다.
2. "정주생활지원금"이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액]

구분	2011~2017년	2018~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안)
10년미만 거주	월 5만원	월 5만원	월 6만원	월 8만원	월 10만원	월 12만원
10년이상 거주		월 10만원	월 12만원	월 15만원	월 16만원	월 18만원

※ 자료: 행정안전부

국토외곽 먼섬 지역 중 “독도”의 경우,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울릉군수로부터 독도에 상시 거주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민간인은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음.³⁾

개정안은 노후화된 주택 개선에 대한 국비지원을 통해 국토외곽 먼섬 거주 주민이 보다 나은 정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며 최외곽에 위치하여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겸하는 국토외곽 먼섬에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서해 5도의 정주생활지원금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정 당시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안전 등의 문제로 이주하려는 주민 등 서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10년 이상 서해 5도에 주소나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망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액) 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금은 1인당 매월 10만원으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금은 1인당 매월 16만원으로 한다.

3)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생계비 지원)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인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말일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생계비 지원기준은 세대당 월 100만원으로 하되, 세대구성원이 2명 이상일 경우 1명을 초과하는 때 1명당 5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생계비 지원방법과 절차는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해 5도가 공도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 서해 5도는 북한과의 대치로 인하여 군사적 충돌과 군사훈련에 따라 생업활동이 저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여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⁴⁾를 반영하여 도입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외곽 먼섬 외에도 육지와 미연결되어있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개발대상섬⁵⁾이 다수 존재하는 등 타 유인도서 주민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측면,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점,⁶⁾ 필요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⁷⁾.

4) 제29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회의록(2010.11.30.),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 회의록(2010.12.3.), 서해5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 심사보고서(2010.12.)

5)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71개 개발대상섬 중 육지와 미연결되어있으며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개발대상섬은 전라남도 신안군 황마도 등 41개임.

6)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정주생활지원금 지원) 강화군수는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급대상 등) ①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도서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주소를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민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

② 제1항의 본문에 따른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주민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에 주소를 등록한 달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지원금은 그 지급대상자별로 매월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적힌 세대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의 신청, 지급절차·방법·시기 등에 관하여는 강화군수가 따로 정한다.

7)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현행 법률을 통해서도 요건에 해당할 경우 노후화된 주택개량 개·보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특별법을 통한 별도 지원 근거 마련 시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는 점, 정부 정주생활지원금은 연평도 포격전 당시 민간인 사상자 발생 및 주택 파손 등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점, 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능성이 계속된 점을 고려하여 현재 서해 5도 지역만 지급 중이며, 필요한 경우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가능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대학 정원 외 입학’ 특례 등 신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기회 확대, 교육비 부담경감과 교육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대학, 교육대학 등)⁸⁾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대학 정원 외 입학’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029호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9조(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국가 등은 국토외곽 먼섬 학생의 의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환경의 개선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신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 ③ 교육부장관은 서해 5도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20029호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9조(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① ----- -----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국토외곽 먼섬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8)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현행	개정안
<신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 ④ 교육부장관은 서해 5도 주민의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별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은 교육부장관이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의 발생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해 5도에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6년을 모두 이수하거나,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12년을 모두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정원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대학 정원 외 입학 특례”를 두고 있음.⁹⁾

9)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의 발생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을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대학 정원 외 입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1. 서해 5도에서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같은 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과 함께 거

현재 국토외곽 먼섬 34개 중 초·중·고등학교가 소재한 섬은 서해 5도에 해당되는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외에 울릉도까지 총 4곳으로,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대학 정원 외 입학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섬은 울릉도 1곳임.

[국토외곽 먼섬(34개) 학교 현황]

(2022. 12. 31. 기준)

시도	시군	섬이름	인구	학교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천광역시 (5개)	옹진군 (5개)	백령도	4,986명	2	1	1
		대청도	1,224명	1	1	1
		소청도	216명	-	-	-
		연평도	2,026명	1	1	1
		소연평도	107명	-	-	-
전라북도 (2개)	군산시	어청도	265명	1	-	-
	부안군	상왕등도	53명	-	-	-
전라남도 (20개)	여수시	거문도	1,185명	-	-	-
	영광군	횡도	3명	-	-	-
	완도군	여서도	98명	-	-	-
	진도군 (6개)	동거차도	118명	-	-	-
		서거차도	99명	1	-	-
		상하죽도	8명	-	-	-
		맹골도	113명	-	-	-
		죽도(조도)	33명	-	-	-
		곽도	8명	-	-	-
	신안군 (11개)	대흑산도	1,731명	1	1	-
		장도	80명	1	-	-
		영산도	54명	1	-	-
		대둔도	288명	1	-	-
		홍도	359명	1	-	-
		상태도	62명	-	-	-
		중태도	14명	-	-	-
		하태도	115명	1	-	-
		가거도	406명	1	1	-
		만재도	70명	-	-	-

- 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2.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다물도	195명	1	-	-
경상북도 (3개)	울릉군 (3개)	울릉도	8,967명	5	1	1
		죽도	3명	-	-	-
		독도	27명	-	-	-
제주도 (4개)	제주시 (2개)	비양도	160명	-	-	-
		우도	1,666명	1	1	-
	서귀포시 (2개)	가파도	224명	1	-	-
		마라도	90명	-	-	-

2022년 울릉군의 총 학생수는 556명(유치원생 81명, 초등학교 264명, 중학생 133명, 고등학교 68명), 총 학교수는 12개(유치원 6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로 나타났으며,¹⁰⁾

2021년 울릉군 사회조사에 따르면, 타 지역 전학(진학) 현황 및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울릉군민은 51.5%로 전년(46.6%) 대비 상승하였으며, 주된 전학사유는 “대도시 학교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56.3%)”, “대학 진학을 위해(26.5%)”로 나타났음.¹¹⁾

개정안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과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근거를 두고, 대학의 정원 외 입학 허용함으로써 국토외곽 먼섬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한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교육을 위한 타지역 전학 등으로 울릉도를 포함한 국토외곽 먼섬 지역이 공동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국토외곽 먼섬의 장기적인 발전 및 인재양성을 위한 측면에서 국토외곽 먼섬에서 일정한 기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10) 제61회 울릉군 통계연보, 2022.7.29.

11) 2021년 경상북도 및 울릉군 사회조사, 조사대상 : 울릉군 360가구, 조사기간 : 2021.9.2.~ 2021.9.17., 조사방법 : 면접조사 및 인터넷조사

다만, 대학 정원 외 입학 특례와 관련하여,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은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한데(농어촌학생),¹²⁾ 해당 요건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은 도서지역¹³⁾으로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정원 외 입학이 현재도 가능하다는 점,

교육부의 「2025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학생의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은 연도별 입학정원 대비 4%,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비 10% 이내이며, 서해 5도 학생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별도로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 이내, 모집단위

1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2호의2·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4.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특성화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졸업자가 이수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생략)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13)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제2조 관련)

1. 도서(132개)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울릉고등학교

별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토
외곽 먼섬 특별전형이 신설될 경우 타 농어촌·벽지 학생과의 대학
입학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2025년도 대학 기회균형 특별전형 현황]

	대상자(정원 외 전형)	비고
1	장애인 등 대상자	
2	농어촌학생(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학생)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4% 이내, 모집단 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정원외 입학 가능
3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5	국가보훈대상자	
6	서해5도 학생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 이내, 모집단 위별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정원외 입 학 가능
7	자립지원 대상자	
8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9	만학도	

※ 자료 : 교육부, 2025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참고로, 교육부는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자녀는 농어촌학생 전형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 정원외 선발 규모 확
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울릉군은 학생 수 부족으로 내신 1등급 학생이 없는 경우가 발생
하는데¹⁴⁾ 대학에서 농어촌 특별전형의 기준으로 내신등급을 고려할
경우 불리한 측면이 있으며, 기회균등을 위한 농어촌 특별전형은 중

14) 내신 1등급은 상위 4%로, 전체 학생 수가 13명 미만인 경우 내신 1등급 학생은 없으며,

울릉고등학교의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내신 1등급 학생이 없는 상황임.

- “전교 1등 해도 내신 1등급 못 받는 고교, 전국에 43곳…학생수 부족 탓”(동아일보,2022.12.22.)

소도시도 해당되어 사실상 혜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특별전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6